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
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함)이 개정(공포 2024. 1. 23, 시행 2024. 7. 24.)됨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47조제2항제3호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(제49조제2항제1호, 제2항 제3호)

- ‘연간’, ‘전년도’, ‘직전 3개월간’으로 혼재되어 사용 중이던 법령상의 용어를 기업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‘전년도’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함

나.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를 정의(제49조의2 제1항)

-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기업을 정의(제49조의2 제1항제1호)

-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 설비·시스템을 미보유한 자로 정의 : 웹호스팅서비스 이용자,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(제49조의2 제1항제2호)

다.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
(제49조의2 제2항)

- 정보통신서비스 특성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연간”을 “전년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“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”를 “전년도”로 한다.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)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
2.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이고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(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

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서비스로 한정)를 이용하는 자

가. 호스팅 서비스(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·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)

나.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. 법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
2.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
3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
4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9조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) ① (생략)		제49조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	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		
1. <u>연간</u> 매출액 또는 세입이 1,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	1. <u>전년도</u> ----- ----- ----- ---		
가.·나. (생략)	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		
2. (생략)		2. (현행과 같음)		
3. <u>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</u> 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. 다만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.		3. <u>전년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<신 설>		<u>제49조의2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) ①</u> <u>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서</u> <u>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</u> <u>해당하는 자”란 「중소기업기본</u>		

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

2.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이고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(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서비스로 한정)를 이용하는 자

가. 호스팅 서비스(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·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

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)

나.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. 법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
2.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
3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
4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463